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87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강명구 · 강승규 · 이종배
박충권 · 윤영석 · 김승수
정동만 · 임이자 · 조경태
김기현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제7조의 제목 “재원”을 “재원 및 비용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제6조(사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연수 사업</u> 6. ----- <u>제5호</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u>재원</u>)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생 략) <u><신 설></u> 2. <u>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u> 외의 자의 출연금 3. · 4. (생 략) <u><신 설></u>	제7조(<u>재원 및 비용보조</u>) ① ----- ----- ----- ----- ----- <u><단서 삭제></u> 1. (현행과 같음) <u>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u>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 ----- ----- 3. · 4. (현행과 같음)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